

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(제24조의2 관련)

물질명	기준농도
염소 및 염화수소	0.4ppm
불소화물	0.05ppm
시안화수소	0.05ppm
염화비닐	0.1ppm
페놀 및 그 화합물	0.2ppm
벤젠	0.1ppm
사염화탄소	0.1ppm
클로로포름	0.1ppm
포름알데히드	0.08ppm
아세트알데히드	0.01ppm
1,3-부타디엔	0.03ppm
에틸렌옥사이드	0.05ppm
디클로로메탄	0.5ppm
트리클로로에틸렌	0.3ppm
히드라진	0.45ppm
카드뮴 및 그 화합물	0.01mg/m ³
납 및 그 화합물	0.05mg/m ³
크롬 및 그 화합물	0.1mg/m ³
비소 및 그 화합물	0.003ppm
수은 및 그 화합물	0.0005mg/m ³
니켈 및 그 화합물	0.01mg/m ³
베릴륨 및 그 화합물	0.05mg/m ³
폴리염화비페닐	1pg/m ³
다이옥신	0.001ng-TEQ(독성 등가치)/m ³
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	10ng/m ³
이황화메틸	0.1ppb
총 VOCs (아닐린, 스티렌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1,2-디클로로에탄, 에틸벤젠, 아크릴로 니트릴)	0.4mg/m ³

비고: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 농도는 0.00으로 한다.